

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(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)			처리기간 7일
제출인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
	③ 주 소		④ 전 화 번 호
시설물	⑤ 위 치		⑥ 용도 및 규모
주차장	⑦ 위 치		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, m <sup>2</sup>
	⑨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의 거리		⑩ 주차장의 형태
	⑪ 착공 예정일		⑫ 준공 예정일
<p>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(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)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출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p>			
수수료	없 음		
첨 부 서 류	제출인(대표자) 제출서류		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
	<p>1. 부설주차장의 배치도</p> <p>2. 공사설계도서(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)</p> <p>3.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</p> <p>4. 토지의 지면·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(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·건축연면적·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)</p> <p>※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.</p>		<p>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(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)</p>

210mm×297mm  
(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)

※ 작성 시 주의사항

1.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2. ③·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3.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.
4.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.
5.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.
6. ⑩란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제 출 인	처리 기관(담당 부서)	협 의 기 관
	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)	관 계 부 서
<pre>graph TD; A[계획서 작성] --&gt; B[접수]; B --&gt; C[검토]; C --&gt; D[결재]; D --&gt; E[통보];</pre>		